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83호

**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
미아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
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, 제2022-412호(2022.10.13.)로 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” 및 “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” 되고, 제2025-617호(2025.11.13.)로 변경결정된 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7호(2025. 11. 13.)로 결정(변경)된 「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」내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각 공공기여 운영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권장용도를 변경(전환)하여 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고시함
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: 변경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: 변경없음
3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: 변경없음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5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 - 가. 특별계획구역 계획: 변경없음
 - 나. 특별계획구역 세부지침 계획
 - 1) 특별계획구역 ①: 변경없음
 - 2)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
 - 공공기여 세부계획

구분		기정	변경	비고
서울시 (아이돌봄담당관)	3층 (전체)	거점형 키움센터	서울 어린이 상상랜드	건축법 상 용도 및 공공기여 면적 변경 없음
강북구 (청소년과)	2층 (일부)	청소년 문화센터	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	

■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내용

구분	권장용도	비고
기정	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·이용원·미용원·금융업소·사무소·부동산중개사무소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서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·일반음식점·학원·독서실·금융업소·사무소·부동산중개사무소 - 판매시설 중 상점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·전시장 - 교육연구시설 -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(거점형 키움센터) -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(청소년 문화센터)	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(지하1층~ 지상3층)
변경	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·이용원·미용원·금융업소·사무소·부동산중개사무소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서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·일반음식점·학원·독서실·금융업소·사무소·부동산중개사무소 - 판매시설 중 상점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·전시장 - 교육연구시설 -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(전환승인) -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(전환승인)	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(지하1층~ 지상3층)

※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탁구장 및 체육도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, 사진관, 교습소는 기 전환승인 받음

6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Ⅲ. 관계도면: 게재생략

※ 홈페이지 게재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

Ⅳ. 열람장소

○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 도시계획과(☎02-901-6873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 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